

【별표 2】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

| 불공정행위 | 세부 위반 내용 | 부과점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뇌물 |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| |
| | 가. 2억원 이상의 뇌물 | 10 |
| | 나.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| 5 |
| | 다.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| 3 |
| | 라. 1천만원 미만의 뇌물 | 2 |
| 담합 | 가.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| 10 |
| | 나. 담합에 참여한 자 | 5 |
| 허위서류 등 | 가. 허위 서류, 위조·변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| 5 |
| | 나. 허위 서류, 위조·변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| 3 |
| | 다.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·변조,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| 3 |
| 안전사고 | 가.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,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| 5 |
| | 나.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| 3 |
| | 다. 안전,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| |
| | (1)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| 8 |
| | (2)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| 5 |
| (3)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| 3 | |

※ [주]

①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
가. 계약연장, 재계약,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: 계약종료일 기준

나.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감점: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

다.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신인도 감점: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

② 위(의)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(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·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,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.